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 
전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2월 28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#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수도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, 수도사용자 등이 조치할 사항 등 일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등에 대하여 신설함(안 제16조).
- 나. 옥내배관의 세척, 갱생,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 신설함(안 제39조).
- 다. 수질검사에 대하여 신설함(안 제40조).
- 라. 수수료 징수 및 수질검사에 관한 권한위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9조).

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수도법」 개정으로 역류밸브설치, 옥내배관 개량비용 지원과 급수관내 정체수 및 저수조 수질검사와 검사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

가산금의 기준을 5%에서 2%로 하향조정, 기타 삭제 및 신설된 조문의 용어와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,

## 주요 내용은

- 조례안을 제5장, 제50조 및 부칙으로 정하고,
-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용어를 법적 용어로 통일하였으며,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53조에서 위임한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,
- 「수도법」 제33조에서 위임한 옥내배관의 세척, 갱생,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
- 「수도법」 및 「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관한 수질검사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
- 조례에 근거없이 규칙의 내용으로 규정된 “급수공사의 분할납부 방법”과 “수돗물의 요금의 감액” 사항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,
- 신고사항의 축소, 가산금의 기준 하향조정,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수관 구경의 현실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였음.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「수도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, 수질검사 규정,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규정,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·개정한 사항으로,

- 이는, 상수도 급수조례가 1979년 7월 제정 이후 40여 차례나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체계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,
- 또한, 「수도법」과 「수도법 시행령」, 「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,
- 조례안 제48조 제5호 나목의 출장비 지급 근거인 「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」 별표1 규정의 적용은 국립환경과학원, 서울특별시, 민간기관의 출장비 수수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 보는 만큼, 출장비 수수료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보된 단가를 참고하는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